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일자:	2023.10.25
-------	------------

개정번호:	1
-------	---

개정일자:	-
-------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제1장 총칙

1. 목적

이랜드리테일 운영 중 발생하는 당사와 협력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협력사와의 신뢰 구축과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2. 기본원칙

- 가. 당사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사와 상호 간의 신뢰구축과 상생협력을 꾀한다.
- 나. 당사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다. 협력사는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협력한다.
- 라.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와 협력사가 추천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들이 포함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능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와 협력사 간 의사소통 체계와 분쟁의 자율전 사전해결기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당사와 협력사 간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이 증폭되기 전에 법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제3의 공적 기관에 의한 해결이 아닌 당사와 협력사 스스로의 협상을 통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소한다.

제2장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자율분쟁조정 기구의 구성

가. 위원회의 구성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공정거래 CP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1)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사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의 위원과 협력사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사의 대표위원과 협력사의 대표위원의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위원은 당사와 협력사간의 상호동의로 선정하고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자격

1) 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2) 협력사 대표 : 협력사 또는 협력사 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3) 권한 및 역할

1) 위원장

- 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의장을 맡는다.
- ③ 의결이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2) 위원

-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나. 분쟁조정 신청 및 대상

- (1) 회사는 거래조건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상시 접수가능 하도록 운영한다.
- (2) 위원회 조정대상
 - ① 계약 관련 필수서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불이익 제공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② 임차인 건강 악화 등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 ③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미이행
 - ④ 영업담당자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⑤ 기타 운영위원회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⑥ 단, 공정거래조정원과 법원 등에 접수 및 진행 건은 배제하며, 단순 불만 관련 안건은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5. 자율분쟁 조정 절차

가. 절차

- (1) 위원회 개시 전(기초조사 및 사전협의)
 -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이후,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한 이후 개시한다.
 - 2) 사안에 따라 협력사 참석하여 위원회를 진행하며, 협력사 참석 시 위원회 개시 최소 3일전에 공지한다.
- (2) 위원회 진행
 - 1)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운영위원 전원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당사와 협력사 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한다. 심의 시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및 위원이 이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위원들은 심리 중이거나 심리가 끝난 후에도 당사자들에게 유·불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 2) 위원장 주관 하에 당사 조정권고안 제시하고, 협력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3) 협력사 불참시, 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협력사에게 즉시 공유하고 협력사 의견을 듣는다.

(3) 위원회 종료

- 1) 심의가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조정권고안을 결정하되, 이견 발생 시 위원장이 중재한다. 운영위원회는 조정권고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들은 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용여부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2)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작성하며, 일방 당사자라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 3) 분쟁조정은 회사 및 협력사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상호 기명날인 함으로써 종료한다.

나. 위원회 보고

위원회 결과는 자율준수위원회에 알린다.

6. 분쟁조정 기간

분쟁조정기간은 분쟁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하되, 분쟁조정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처리한다.

단, 분쟁 당사자들 간에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기타

7. 분쟁조정 종료 후의 조치

분쟁조정 종료 후 당사자들 및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권고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사무국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나.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적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며, 일방이 소 제기를 하거나 공적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 조정 중에도 또한 같다.

8. 기록물 등의 보관과 비밀엄수의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과 비밀엄수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합의서 등을 문서로 등록하여 사전에 정한 보존기한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 조정 경과와 협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위원회관련 문서는 당사 문서보관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다. 위원장과 위원 및 분쟁조정기구 회의 참석자는 회의에서 취득된 모든 정보들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첨. 이랜드리테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프로세스

